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4일, 송재봉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6.03.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재봉의원)

현행법은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에 한정하여 구조와 성능 등이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적합성,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인 픽시(Fixie)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반 자전거 역시 구조·장치 측면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전거의 개조 및 운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의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적합성, 불법 개조

금지 및 불법개조된 자전거의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 하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 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자 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 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4건의 개정 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